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034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0. 10. 16.
4. 회부일자 : 2020. 10. 26.

II. 개정이유

- 2021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유치원 19개원 신설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1. 초등학교 명칭 및 위치 (안 별표 1)

신설: 1개교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서울강빛초등학교(강동구 아리수로93다길 1)

2. 중학교 명칭 및 위치 (안 별표 2)

신설: 2개교

- 남부교육지원청
 - 신길중학교(영등포구 신길로28길 43)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강빛중학교(강동구 아리수로93다길 1)

3. 유치원 명칭 및 위치 (안 별표 7)

□ 신설: 19개원

- 동부교육지원청
 - 서울봉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중랑구 신내로15길 110)
 - 서울신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중랑구 봉화산로 188)
 - 서울중목초등학교병설유치원(중랑구 동일로 665)
- 서부교육지원청
 - 서울소의초등학교병설유치원(마포구 마포대로24길 42)
 - 서울중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마포구 월드컵북로 152)
- 북부교육지원청
 - 서울계상초등학교병설유치원(노원구 한글비석로41가길 24)
 - 서울당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노원구 동일로213길 52)
 - 서울송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도봉구 노해로 179)
 - 서울쌍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도봉구 우이천로 360)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서울강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강동구 아리수로93다길 1)
 - 서울솔방울유치원(송파구 오금로24길 25)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서울양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양천구 오목로23길 24)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 서울학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강남구 선릉로115길 42)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 서울신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광진구 능동로 42)
 - 서울용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광진구 용마산로22길 82)
 - 서울무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성동구 무학봉15길 21)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 서울수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강북구 한천로124길 14)
 - 서울우이유치원(강북구 삼양로99길 36)

- 서울좋은소리유치원분원(성북구 송인로 50)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별첨 5])

가.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2.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별첨 2])

3. 관련부서 협의 : 정책·안전기획관, 예산담당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협의완료

4. 기 타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나. 입법예고(2020.9.3.~9.23.) 결과 : 의견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제외대상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확인서 [별첨3]

바. 학생인권영향평가: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별첨 4]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034호로 제출되어 2020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 1일자로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2개교, 유치원 19개원 신설에 따른 후속적인 입법 조치를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학교 신설 추진에 관한 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강빛초등학교와 신길중학교, 강빛중학교 등 3개교와 솔방울유치원, 우이유치원 등 단설유치원 2개원 및 봉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16개원, 서울좋은소리유치원분원 1개원 등 총 22개교(원)가 내년 3월 1일에 개교될 예정에 있는바, 이를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먼저 초·중통합학교(이음학교)인 강빛초등학교와 강빛중학교, 신길중학교, 매입형유치원인 솔방울유치원, 우이유치원 등 5개교(원)는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를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우이유치원을 제외한 4개교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모두 65%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내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데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학교신설 관련 사전절차 이행 및 공정율 현황

(기준 : 2020.12.)

학교명	(가칭) 학교명	자체투자 심사	중앙투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일	공정율 (%)
강빛초	강빛초	'18. 2. 23.	'18. 4. 11.	'18. 6. 19.	79%
신길중	신길중	'18. 2. 23.	'18. 4. 11.	'17. 11. 29.	65%
강빛중	강빛중	'18. 2. 23.	'18. 4. 11.	'18. 6. 19.	79%
솔방울유	송파유	'19. 9. 18.	'19. 12. 19.	'20. 9. 7.	100%
우이유	우이유	'19. 3. 4.	'19. 4. 19.	'19. 6. 18.	17%

○ 다만 강북구 우이초등학교 내 10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으로 설립 될 예정인 우이유치원은 설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2019년 6월에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정률이 17%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이유치원 설립 부지에 대한 지반 보강 등으로 인해 당초 예정되었던 공사착공 시기보다 약 1년 정도 늦은 2020년 6월에서야 공사 착공이 이루어짐에 따른 것으로, 단설유치원의 설립이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2021년 3월 개교까지는 공사기간이 상당히 촉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우이유치원의 개교가 동 조례안에 명시한 것처럼 2021년 3월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우이유치원 공정율 현황

학교명	(가칭) 학교명	자체투자 심사	중앙투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일	공정율 (%)
우이유	우이유	'19. 3. 4.	'19. 4. 19.	'19. 6. 18.	17%

- 다음으로 강빛초병설유치원은 강빛초등학교와 강빛중학교 신설과 같이 추진되는 것이며, 봉화초병설유치원 등 15개원은 기존 초등학교의 유휴교실 등을 활용하여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인바, 이들 유치원은 유아들의 공교육 기회 확충이라는 필요성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절차상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일부 병설유치원의 경우 현재까지도 설계 진행 중에 있는 등 공정율이 미흡한 경우도 있지만, 유휴교실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거쳐 개원하는 병설유치원의 특성상 공사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에서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 1일 개원에는 사업추진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3] 병설유치원 공정율 현황

(기준 : 2020.12.)

학교명	자치구	규모		공정율(%)
		학급수	정원(명)	
봉화초병설유	중랑구	3	62	5%
신현초병설유	중랑구	4 (특수학급 1 포함)	62	5%
중목초병설유	중랑구	3	62	9%
소의초병설유	마포구	3	62	100%
중동초병설유	마포구	3	62	설계완료
계상초병설유	노원구	2	46	80%
당현초병설유	노원구	3	62	70%
송미초병설유	도봉구	4 (특수학급 1 포함)	62	85%
쌍문초병설유	도봉구	2	46	20%
강빛초병설유	강동구	13 (특수학급 2 포함)	248	79%
양동초병설유	양천구	5 (특수학급 1 포함)	78	설계진행중
학동초병설유	강남구	3	62	100%
신양초병설유	광진구	3	62	30%
용곡초병설유	광진구	3	62	68%
무학초병설유	성동구	3	62	100%
수송초병설유	강북구	4 (특수학급 1 포함)	62	100%

- 다음으로 성북구에 위치한 서울좋은소리유치원분원은 단설유치원인 서울좋은소리유치원을 해당 지역의 아파트 단지 내에 분원의 형태로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296회 서울시의회 폐회중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2020.9.7.)을 얻은바 있습니다.
- 동 분원은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서 건물 내 리모델링을 통해 2021년 3월 1일 개원할 예정인바, 사업추진 시기상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아직까지 유치원의 분교(분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나 교육부의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슬가람유치원의 분원에 이어 또 하나의 분원을 설립하는 것은 아무리 정부의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법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분원을 설치할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교명 제정에 관한 의견

- 한편 신설되는 학교의 교명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제4조1)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시교육청의 교명제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 강빛초, 신길중, 강빛중, 슬방울유, 우이유, 좋은소리유치원분원 등 6개교(원)의 교명은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거친 후 서울시교육청의 교명제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것으로 교명과 관련하여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1) 제4조(교명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립학교의 교명 제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립학교 교명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하에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교명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에 두는 교명제정자문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야 한다.

됩니다.

[표-4] 학교명 심의 결과

학교명	(가칭) 학교명	교명제정자문위원회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선정명칭	심의일	선정명칭	심의일
강빛초	강빛초	강빛초	'20. 8. 11.	강빛초	'20. 8. 25.
신길중	신길중	신길중	'19. 4. 11.	신길중	'20. 8. 25.
강빛중	강빛중	강빛중	'20. 8. 11.	강빛중	'20. 8. 25.
솔방울유	송파유	솔방울유	'20. 8. 11.	솔방울유	'20. 8. 25.
우이유	우이유	우이유	'20. 8. 20.	우이유	'20. 8. 25.
좋은소리유 분원	좋은소리유 분원	좋은소리유 분원	'20. 8. 20.	좋은소리유 분원	'20. 8. 25.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교육기본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50호, 2018. 12. 18., 일부개정]

-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

[시행 2020. 3. 4.] [법률 제16682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教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